22

## 지식재산권 관리

□ 소관 : 산학협력단□ 주무 : 특허기술팀

1. 업무개요

■ 목적 : 한국교통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,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■ 시기 : 연중

■ 관련법령 또는 근거

- 발명진흥법 /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-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'지식재산권 규정'이라 함)
- 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시행지침(이하 '시행지침'이라 함)
- **관련부서** : 전 부서

#### 2. 업무흐름도

■ 특허 관리 업무

#### 발명의 신고 (발명자 → 산학협력단)

직무발명·자유발명 신고 (신고서류 작성 후 특허기술팀에 제출)

#### 선행기술조사 의뢰 (산학협력단 → 특허사무소)

발명신고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특허시무소에 선행기술조사 의뢰

#### 특허상담 의뢰 (산학협력단 → 특허사무소)

선행기술조사 후 발명자 상담 진행 (유선, 미팅, 이메일 등)

#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(산학협력단)

발명 승계 및 출원여부 결정 (심의결과 발명자 이메일 통보)

## 명세서 작성 및 검토 (특허사무소, 발명자)

특허사무소(명세서 작성) 발명자(명세서 검토)

#### 출원 지시 (산학협력단 → 특허사무소)

최종 명세서 검토 후 출원 지시

#### 출원완료 보고 (특허사무소 → 발명자) (특허사무소 → 산학협력단)

이메일을 통한 출원완료 통보

#### 중간사건 처리 (산학협력단, 발명자, 특허사무소)

특허청 심사 진행 (의견통지서, 거절결정서 등 대응)

### 등록결정 및 등록 (특허사무소 → 산학협력단)

특허사무소(등록결정 보고) 산학협력단(등록 지시) (발명자에게 이메일 안내)



#### ■ 프로그램, 기타 저작권 관리 업무

#### 등록신청서 작성 (발명자 → 등록시스템)

한국저작권위원회
(https://www.cros.or.kr/main.cc)
에 발명자 개인용 인증서를
이용하여 신청인(대리인)
자격으로
등록 신청서 작성

#### 등록비용 비용 납부 (발명자 → 한국저작권위원회)

등록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발명자 개인비용으로 비용 부담 (신청 후 바로 비용납부가 진행되기에 산학협력단 선 지급 불가)

#### 위임 및 동의 (한국저작권위원회 → 산학협력단)

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명자에게 저작권자의 위임 및 동의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하며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에 승인 요청

#### 등록 완료 안내 (한국저작권위원회 → 산학협력단)

등록 완료 메일 통보 (산학협력단에서 발명자에게 메일 안내)

### 등록비용 요청 (발명자 → 산학협력단)

발명자 선 지급(산학협력단 선 지급이 불가)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, 프로그램 등록증을 송부하면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승인건에 한하여 산학협력단 지원

## 3. 주요내용

#### ■ 업무 처리 세부 절차

- 직무발명 신고 의무(지식재산권 규정 제10조)
-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
- 제출서류 : 직무발명신고서, 발명내용설명서, 양도증, 선행기술조사서 \* 가

○ 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(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)

-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르 결정하여야 함
-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- 특허비용 부담(지식재산권 규정 제13조, 시행지침 제6조 · 제9조)
- [원칙] 특허 취득을 위한 제비용은 전담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
- [예외] 발명자가 비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, 출원 전 심의위 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출원 가능

구 분		관련 절차	
단독출원	연구과제 성과물이 이닌 경우	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승인 후 특허 출원 진행	
	연구과제 성과물인 경우	[원칙] 해당 과제 연구비(성과활용지원비)에서 특허출원 제비용 부담	
		[예외]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내 성과활용지원비	
		계상이 불가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	
		- 특허 출원 1건은 필요 지원 사항	
		- 특허 출원 2건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	
공동출원		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모든 비용은 공동출원인(기업 등)이 부	
		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구과제 내에서 출원비용 부담	
		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비로 부담하고, 등록 및 유지비용은 공	
		동출원인(기업 등) 부담	
		공동출원 계약 체결 시에는 지분율에 따라 지원	
		출원·등록·유지 등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발	
해외특허		명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	
		원 결정	
		특허비용은 시행지침 제6조 [표1]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	
		발명자가 일부 부담 기능	

## 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## ■ 직무발명 권리승계(지식재산권 규정 제12조)

○ 한국교통대학교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
#### 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○ 특허는 출원인이 "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"인 경우만 인정하며, 배점×인정 환산율을 점수로 부여하되, 각 구분에 대한 배점한도 적용

평가항목	배 점		비고
국제특허등록	200		
국내특허등록	100		인정환산율 : 1/n
실용신안, 의장, 소트프웨어	50	50점한도	



#### [참고 1]

## 〈관련 규정〉

#### (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)

- 제9조(지식재산권의 귀속) 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특허권은 산학협력단이 승계·소유한다. 단,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이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·소유한다.
  - ② 교직원등이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연구계약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③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- 제10조(직무발명의 신고의무) 교직원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- 1. 직무발명 신고서(별지 제2호 서식)
  - 2. 발명내용 설명서(별지 제3호 서식)
  - 3. 양도증(별지 제4호 서식)
  - 4. 선행기술 조사서(별지 제5호 서식)
- 제11조(자유발명의 신고)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 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.
  -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권리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지체 없이 그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제13조(특허취득 및 유지관리) 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하고 관련서류의 사본을 발명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-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. 단, 제1항의 발명이 연구과제의 성과물인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연구비에서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3조제2호 후문에 규정된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또는 그 산하기관과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라서 그 비용을 분담한다.
- ④ 산학협력단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당해 발명의 특허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할 책임을 진다.
- ⑤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취득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업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(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 시행지침)

- 제3조(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지식재산권)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이 예상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4조(심의의 생략) 직무발명의 출원·등록·계속보유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 용역과제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여부 및 출원·등록·계속보유 여부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**제5조(계속보유의 포기**) ① 등록 후 5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계속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산학협력단은 포기한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  - ③ 발명자에게 양도된 특허를 실시, 기타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발명자에게 분배하는 실시료의 비율은 규정 다음과 같다.
  - 1.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
  - 2. 수익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5를 지급한다.
- 제6조(외국 특허 출원비용 등의 지원) ① 외국 특허의 출원·등록·계속보 유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매분기마다 사전에 신청받아 위원회에서 심의

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.

② 외국 특허 출원비용 및 지원액은 기술평가 결과 및 [표1]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[표1] 직전 3년 간접비(산단분) + 기술료 입금액

지급기준 계상기준	월临자	연간지급한도 (천원)
1억이상 ~	5,000천원 X 100%	5,000
5천만원이상~1억원미만	5,000천원 X 80%	4,000
2천만원이상~5천만원미만	5,000천원 X 50%	2,500
5백만원이상~2천만원미만	5,000천원 X 30%	1,500
5백만원 미만	미지원	0

- ※ 출원비용, 의견서, 등록비용 등을 위 범위 내에서 지원
- ※ 기술성평가는 산단에서 별도로 의뢰
- ※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
- ③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- 제8조(징계조치)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원회는 총장에게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제9조(전담특허사무소의 이용) 특허의 출원, 중간사건, 등록 등의 비용은 한국 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발명자가 전담특허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를 지정할 사유가 있을 때는 출원 전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